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68 발의연월일: 2025. 2. 14.

발 의 자:서미화·허성무·이수진

안규백 • 박정현 • 강선우

이연희 · 한준호 · 한민수

정을호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국회는 소위 3선 경호의 체계를 취하고 있는바, 회의장 및 그 인근은 경위, 국회 내 건물 및 그 인근은 방호, 국회 외곽 및 그 인근 과 국회의장 공관은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가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고, 필요한경우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방호나 국회경비대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현행 3선 경호 체계의 업무분장이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경위, 방호 및 국회경비대의 각 업무 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청사 질서 유지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

퇴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 및 질 서유지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44조 및 제145조의2).

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4조의 제목 "(경위와 경찰관)"을 "(경호 조직)"으로 하고, 같은 조제1항 중 "경위(警衛)"를 "경위·방호 및 국회경비대"로 하며, 같은 조제3항 중 "수행하되,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,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"를 "수행하되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경위: 회의장 및 그 인근
- 2. 방호: 국회 내 건물 및 그 인근
- 3. 국회경비대: 국회 외곽 및 그 인근과 의장 공관
- ④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제3항제 2호 또는 제3호의 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한다.

제1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5조의2(청사의 질서 유지) ① 의장은 국회 청사 내에서 국회의 안 전과 질서유지에 위해(危害)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 도에 그쳐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그 행위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상황으로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4조(경위와 경찰관) ① 국회	제144조(경호 조직) ①
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<u>경위</u>	<u></u> 경위·
<u>(警衛)</u> 를 둔다.	<u>방호 및 국회경비대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	③
받아 수행하되, 경위는 회의장	<u>수행하되 각각 다음 각</u>
건물 안에서, 경찰공무원은 회	호의 구분에 따른 구역에서 업
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.	무를 수행한다.
<u> &lt;신 설&gt;</u>	<u>1. 경위: 회의장 및 그 인근</u>
<u>&lt;신 설&gt;</u>	<u>2. 방호: 국회 내 건물 및 그</u>
	<u>인근</u>
<u>&lt;신 설&gt;</u>	3. 국회경비대: 국회 외곽 및
	그 인근과 의장 공관
<u>&lt;신 설&gt;</u>	④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
	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
	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구역
	에서 업무를 수행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제145조의2(청사의 질서 유지) ①
	의장은 국회 청사 내에서 국회
	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위해(危
	害)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
	있는 사람을 강제로 퇴거시킬
	수 있다. 이 경우 유형력의 행

<u>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</u> <u>야 한다.</u>

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그 행위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상황으로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